

제 2 6 4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2.7.26.)

#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민섭]



# 목 차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1
2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3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4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1
6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79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7.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7. 11.

#### 2.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어려운 용어 등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일괄정비대상 : 12개 부서 21개 조례
- 나.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정부합동평가 대상
  - 1)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제명 변경된 경우 정비
    -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회계법 ⇒ 국가재정법
-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2) 상위법령의 내용이나 용어 변경된 경우 정비

- 가)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계급별 여비 지급 구분 일부 정비에 따라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여비
- 나)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사항 반영
- 다) 특별회계 설치 시 존속기한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장학금특별회계 삭제
- 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마) 실무위원회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 바) 자연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사)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 3)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 및 신설된 경우 정비

-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제36조제6항
- 다) 농지법 제34조 ⇒ 제32조
- 라) 건축법 제19조 ⇒ 제23조

다.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 정비 대상

- 1)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2) 한한다(한함) ⇒ 한정한다(한정함), 월 ⇒ 개월, 인 ⇒ 명

- 3)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의거 ⇒ 에 따라(따른)
- 4) 당해 ⇒ 해당, 이라 함은 ⇒ 이란, 잔여임기 ⇒ 남은 임기
- 5) 범위내 ⇒ 범위, 회무 ⇒ 업무, 날로부터 ⇒ 날부터
- 6) 한 때 ⇒ 한 경우,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7) 자 ⇒ 사람, 요하는 ⇒ 필요한, 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5. 9.~5. 3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주로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일괄개정 자치법규' 안에 통합하여 12개부서 21개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고자 하며

- 2010년 이전에 개정 연혁이 없는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된 사항과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집행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와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706호, 2021. 5. 25.,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계급별 여비 지급 구분 일부를 정비하고,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하여 국외 여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항공운송의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1. 5. 25.>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p>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p> <p>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p> <p>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p> <p>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p>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u>제2호</u>	<u>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u>

## ↑ 개정 전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17. 7. 26.>

####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p>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p> <p>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p> <p>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p> <p>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p>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 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2호, 2019. 12. 10.,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추가하고,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제2호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비, 자동차운전 및"을 "경비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가입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2.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6. (생략)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생략)

8. (생략)

②~③ (생략)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국토교통부령 제630호, 2019. 6.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개편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중 자본금 또는 자산평

가액의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개편(안 제52조의3 신설, 안 제6조, 제21조,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3조 및 별표 1)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용달·개별·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일반으로 구분함에 따라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전 [별표 1] <개정 2016.1.7.>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 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 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 업
허가기준 대 수	<input type="radio"/> 1대 이상	<input type="radio"/> 1대	<input type="radio"/> 1대 이상. 다만, 집 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input type="radio"/>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 대수가 2대 이 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input type="radio"/>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 대수가 2대 이 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최저보유차 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 이와 너비를 곱한 면 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 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주차 여 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소

		<p>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화물자동차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li> <li>○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li> <li>○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li> <li>○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특수자동차</li> <li>○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li> <li>○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li> <li>○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li> <li>○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li> <li>○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자동차</li> <li>○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덮개·결박 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자동차</li> </ul>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p><b>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안전관리</b> 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b>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b>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p> <p>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p> <p>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p> <p>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p> <p>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0;">&lt;신 설&gt;</p> <p>② (생략)</p> <p>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④ 관할 지역의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방송 및 홍보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지역 방송 사업자 및 단체 등이 대표자로 구성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p> <p>⑤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지역재난 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0;"><u>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u></p> <p>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u>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u>를 둘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0;">&lt;삭 제&gt;</p> <p>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u>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u>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95호, 2012. 10. 22.,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 시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지역별 기온·강우량·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함.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50호, 2011. 4. 5.,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4. 14.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집계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색상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상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상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좀 더 쉽게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을 교육·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일부개정]

#### ◇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시행하고,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며, 환경 관련 사업체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26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촌용수구역이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12. 15. 전부개정으로 제24조제3항 신설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流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 ③ 시·군·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 □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26호, 2022. 1. 6., 일부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26호, 2022. 1. 6., 일부개정]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측망을 전국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관측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지하수 측정망</u> 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하수 측정망을 이용하

<p>축산식품부장관이 <u>지하수 수위관측망</u>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관측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 수위관측망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④ (생략)</p>	<p>여 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	--

## □ 「농지법」

[시행 2006. 4. 30.]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3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農產物·林產物·畜產物·水產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農業·林業·畜產業·水產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

## 축물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 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 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 · 허가 ·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 (關係法侖에 의하여 認可 · 許可 · 승인등을 얻거나 申告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工事 또는 사업에 착수한 者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4.11. 전부개정

## □ 「농지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 · 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 · 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 · 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 · 복원 · 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礦)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 · 허가 ·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 허가 ·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 □ 「건축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9조(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삭제 <2005. 11. 8.>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경우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8. 3. 21. 전부개정

## □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중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

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7.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7. 11.

### 2. 제안이유

-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학생일 경우에도 교복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학교 및 품목을 확대함(안 제2조·제3조)
  - 1)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추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현행) 교복 구입비 ⇒ (추가) 일상복 구입비  
나. 그 밖에 문장 및 용어 정비(제5조·제6조·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24백만원 추경 확보예정(도비 1천만원)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  
    가) 예고기간: 2022. 6. 21.~7.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 개정(2021.12.30.)으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일 경우에도 교복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 및 교복 자율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거창군 교복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 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 ·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 · 수산 · 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가.~더. (생 략)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 운영 · 지도
-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 · 등록 · 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 · 행사 · 대회의 유치 · 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체 등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 5) 약칭 사용의 정도와 방법

“A, B, C~”를 약칭할 때에는 “A”로 약칭하는 것을 피하고 “A, B, C~”등의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하면 “A등”으로 약칭하고 이 경우 “등”을 붙여 쓸 수 있다.

## □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 4.“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5.“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경상남도지사 (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 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일상복 구입비 추가지원
- 나. 관련 조문: 안 제3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교복+ 일상복)

(단위: 천원)

구분	1차 연도 (2022년)	2차 연도 (2023년)	3차 연도 (2024년)	4차 연도 (2025년)	5차 연도 (2026년)
계	346,8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도비	104,040	99,000	99,000	99,000	99,000
군비	242,760	231,000	231,000	231,000	231,000

## 3. 관련 의견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외의 일상복 구입비도 지원 확대 함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고자 함

## II. 2022년도 일상복 추가에 대한 비용추계 상세 내역

- 가. 중학생: (입학 62명+ 전입학 15명)×300천원 = 23,100천원
- 나. 고등학생: (입학 29명+ 전입학 10명)×300천원 = 11,700천원
- 다. 사업비: 34,800천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7.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7. 11.

## 2. 제안이유

- 수승대 관광지 활성화 및 이용 편의를 위해 거창군민의 시설이 용료를 경감하고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며 카라반 캠핑장을 폐지하고 야영 데크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야영장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안 제3조 및 별표 1)
  - 1) 카라반캠핑장 폐지 ⇒ 오토캠핑장으로 이용범위 확대
  - 2) 야영데크 이용시간 조정
- 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썰매장 이용권 서식 삭제(안 제4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 다.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5조제3항)

- 1) 거창군민, 30퍼센트
  - 2)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 50퍼센트
- (가)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를 열거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그 사항 반영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67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6. 2~6.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수승대 관광지 활성화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개정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카라반 야영장을 폐지하고 자동차 야영장으로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야영 데크 이용 시간을 '그날 14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에서 '그날 1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변경, 거창군민 시설 이용료 30%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자 확대 등으로

- 본 조례 개정으로 군민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수승대 관광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 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 다. 야영장업

-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7호, 2022. 5. 9., 일부개정]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 □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2020.6.]** [행정안전부 · 국가보훈처]

### I . 정비필요성

####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이 제정 · 시행되고 있음

#### < 국가보훈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 할 수 있다.

## 2. 정비필요성

- (감면 거부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 대상을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 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 발생

⇒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부처 간 협업) 지자체 운영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자치법규 규정 정비에 관한 국가보훈처 협업 요청

## II. 법령 상 요금감면 대상 및 범위

### 1 관련 법령(상세는 첨부자료 참조)

-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송환법(국방부 소관)도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위 8개 법령에서 감면대상 시설·요금 및 감면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규정 방식도 유사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관계법령	국가유공자법	<input type="radio"/> 유공자 본인 <input type="radio"/> 배우자 <input type="radio"/> 유족 중 선순위자* <input type="radio"/>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독립유공자법	<input type="radio"/> 유공자 본인 <input type="radio"/> 배우자 <input type="radio"/> 유족 중 선순위자 <input type="radio"/>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input type="radio"/>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input type="radio"/>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input type="radio"/>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18유공자법	<input type="radio"/> 유공자 본인 <input type="radio"/> 배우자 <input type="radio"/> 유족 중 선순위자 <input type="radio"/>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 ~ 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input type="radio"/> 유공자 본인 <input type="radio"/> 배우자 <input type="radio"/> 유족 중 선순위자 <input type="radio"/>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	<input type="radio"/> 의상자 본인 <input type="radio"/>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input type="radio"/> 배우자 및 자녀 <input type="radio"/>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 · 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input type="radio"/> 등록포로 <input type="radio"/>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관전시 제외

⇒ 의무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모두 열거할 것을 권고함

##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당일 ⇒ 그날, 익일 ⇒ 다음 날



##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7.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7. 11.

#### 2. 제안이유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정비(안 제13조·제14조)
- 나.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둠(안 제16조)
- 다. 용어 및 문장 정비함(안 제17조·제18조·제21조·제22조)
- 라. 법령 입안 원칙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제4조·제20조·제23조·제24조)
  - 1) 삭제: 당연직 위원 임기, 위원회 수당
  - 2) 변경

- (가) 법령의 정의와 같은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 표현방식
  - (나) 회의록 작성·보존 주체 간사⇒ 군수
- 마. 위원회 운영세칙 신설함(안 제24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30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6. 15.~7.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민참여단 정비,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용어 순화, 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 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

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 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 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의견22-0066

~살피건대,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되는 위원을 말하는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은 형식적으로는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연직 위원 제도가 있는 것은 심의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법령입안·심사기준)

### 회의록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그 주체 P217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법령상 회의록의 작성보존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회의록의 작성보존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제13조 제3항에서도 위원회의 회의록은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칙과 부칙의 장·절의 구분 등 P312

자치법규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

### 라)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게하고 의견조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7.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7. 11.

####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①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 1. 제안이유

- 종합 정비계획 용역 시 지적 불일치가 제기되어 거열산성이 포함된 인근 편입 토지와 문화재구역 산림청 토지를 매입하여 국가사적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 2. 주요내용

###### 가. 취득 개요

- 기간 : 2022. 5. ~ 12.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2번지 일원
- 취득면적 : 17,278m<sup>2</sup>(7필지)
- 사업비 : 178백만원(국 124.6, 도 26.7, 군 26.7)
- 내용 : 거열산성 토지 매입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사유지		17,278	14,065.4			
취득	토지	거창읍 상림리 산45-2	임	4,364	2,618.4	2022년	거열산성 토지 매입	국(산림청)
		거창읍 가지리 산156-2	임	1,884	1,130.4			국(산림청)
		거창읍 가지리 산87-2	임	1,884	5,878			국(산림청)
		마리면 영승리 산87-1	임	6,645	2,458.6			신*식
		거창읍 가지리 산158	임	1,410	1,325.4			김*자
		거창읍 가지리 산161	임	496	297.6			김*재
		거창읍 가지리 산162	임	595	357			김*재

※ 토지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 다. 추진경과

- 2020. 9. 24. :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 2021. 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문화재구역내 사유지 취득)
- 2021. 10. : 문화재구역 편입토지 감정평가
- 2021. 11. ~ : 문화재구역 편입토지 보상 협의

## 라. 향후계획

- 2022. 6. ~ 9. : 보상계획 공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 2022. 10. ~ 1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마. 기대효과

- 사적의 안전한 보호 및 문화재 보존 · 관리의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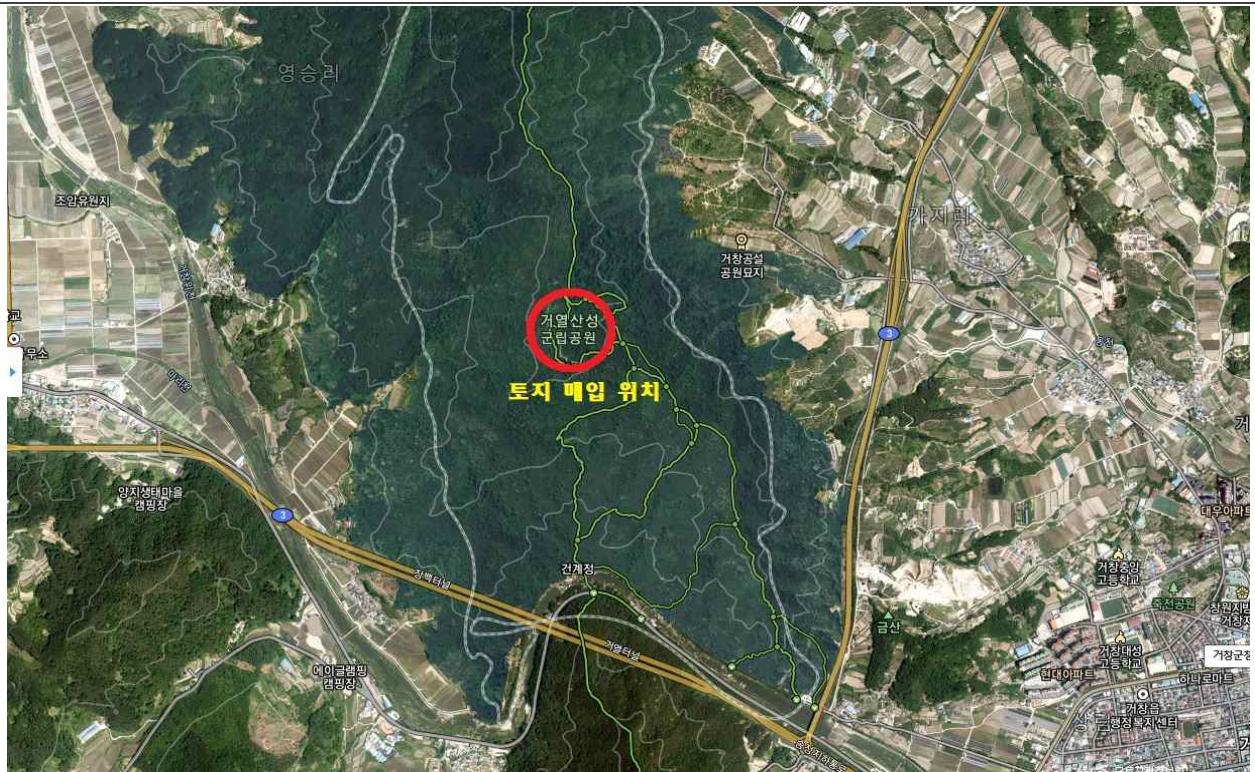
### 3. 관련법규 및 조례 : 붙임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불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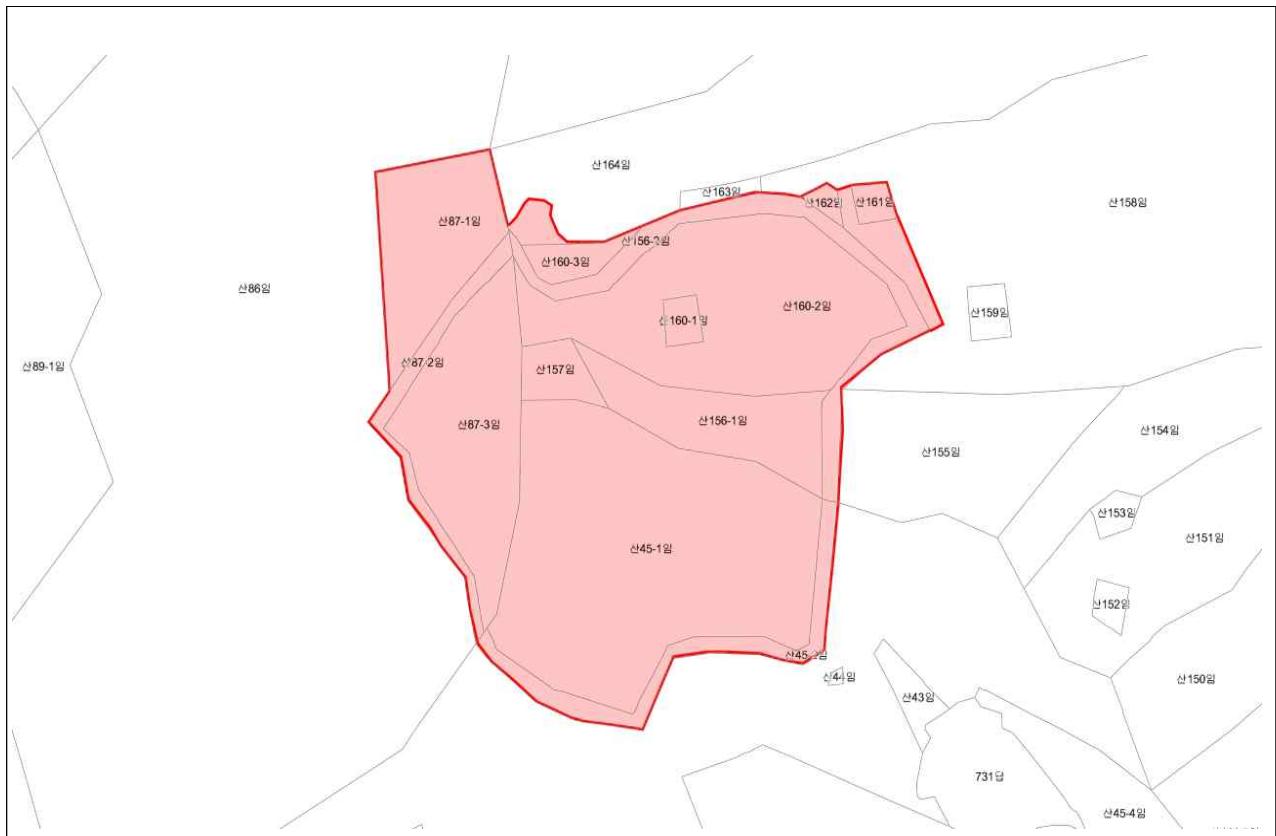
## 사진설명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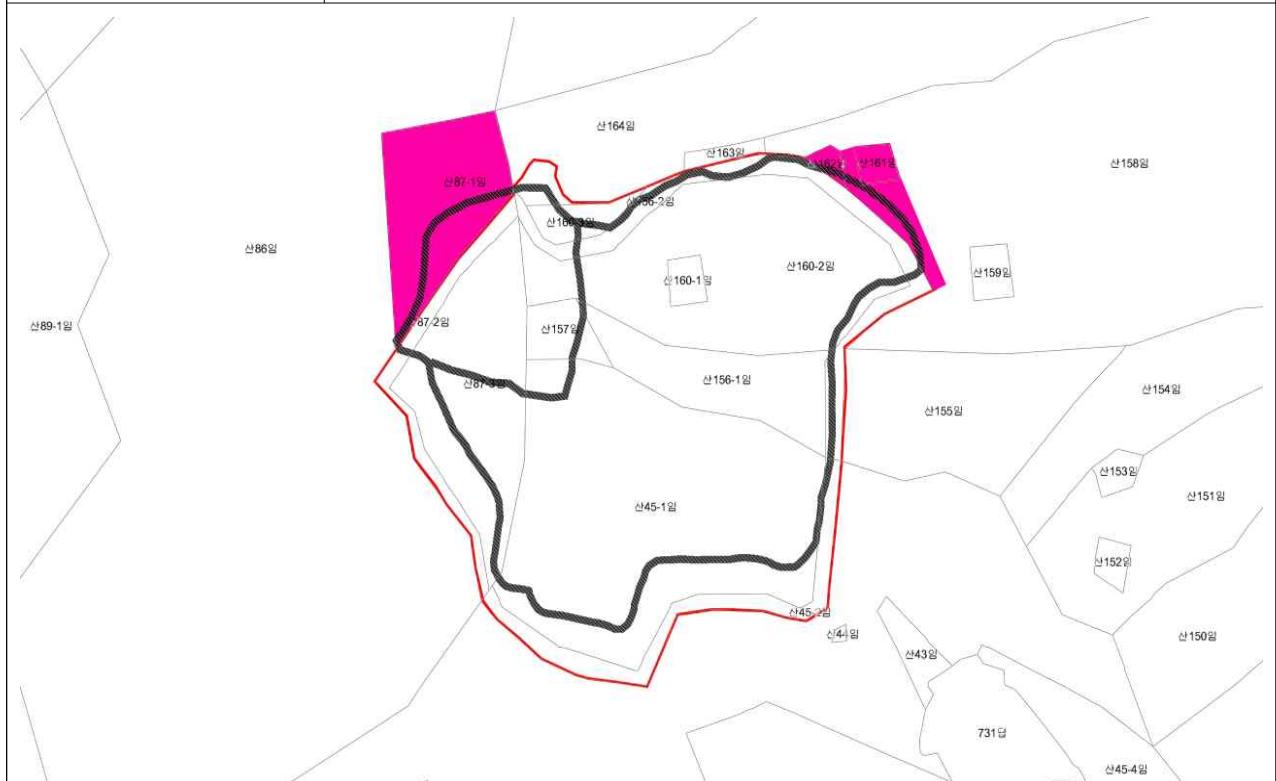
## 사진설명

## 거열산성 전경



사진설명

지형도면



사진설명

지형도면(지적 불일치 및 편입 토지)

##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거열산성이 포함된 토지 7필지(국유지 3필지, 개인 소유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은 거열산성의 원형을 보존하고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를 통해 관광 자원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 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② 2022년 1차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1. 제안이유

- 주차난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에 자투리땅과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 도모

### 2. 주요내용

####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위치 : 거창읍 대동리 30-3번지 등 12필지
- 취득면적 : 토지 1,617m<sup>2</sup> / 주택 323.58m<sup>2</sup>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정도

####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예상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940.58	2,054,716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30-3	대	98	81,536	2022	소규모 주차장 조성	임*희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30-11	대	16	13,184	2022	“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83-10	대	154	108,108	2022	“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241-2	대	355	261,990	2022	“	현대****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241-1	전	7	5,166	2022	“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240-2	대	22	16,236	2022	“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237-4	전	26	5,980	2022	“	
취득	토지	거창읍 중앙리 314-24	전	327	654,000	2022	“	백*석 백*석
취득	토지	거창읍 중앙리 342-3	대	175	256,900	2022	“	신*성
취득	주택	거창읍 중앙리 342-3	-	98.07	60,000	2022	“	
취득	토지	거창읍 상림리 98-7	대	195	255,450	2022	“	박*안
취득	주택	거창읍 상림리 98-7	-	92.56	59,000	2022	“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5	대	233	211,098	2022	“	허*자
취득	주택	거창읍 대동리 55	-	132.95	62,000	2022	“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5-4	전	9	4,068	2022	“	

※ 기준가격

- 토지 : 공시지가×면적×2, 건물 : 개별주택가격

## 다. 추진경과

- 2022. 1. ~ 2. : `22년 1차 단독주택(나대지) 매입 공고
  - 신청현황 : 14개소 20필지
- 2022. 4. : 매입부지 선정 심의 완료
  - 선정현황 : 6개소 12필지
- 2022. 6.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감정평가
- 2022. 6. : 보상협의

## 라. 향후계획

- 2022. 7. : 대상지 실시설계 용역
- 2022. 8. ~ 10. : 착공 및 준공

## 마. 기대효과

-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흡수로 주차난 해소 및 양방향 불법 주차 감소로 차량 교행 원활
-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대비 조성 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

## 3. 관련법규 및 조례 : 붙임참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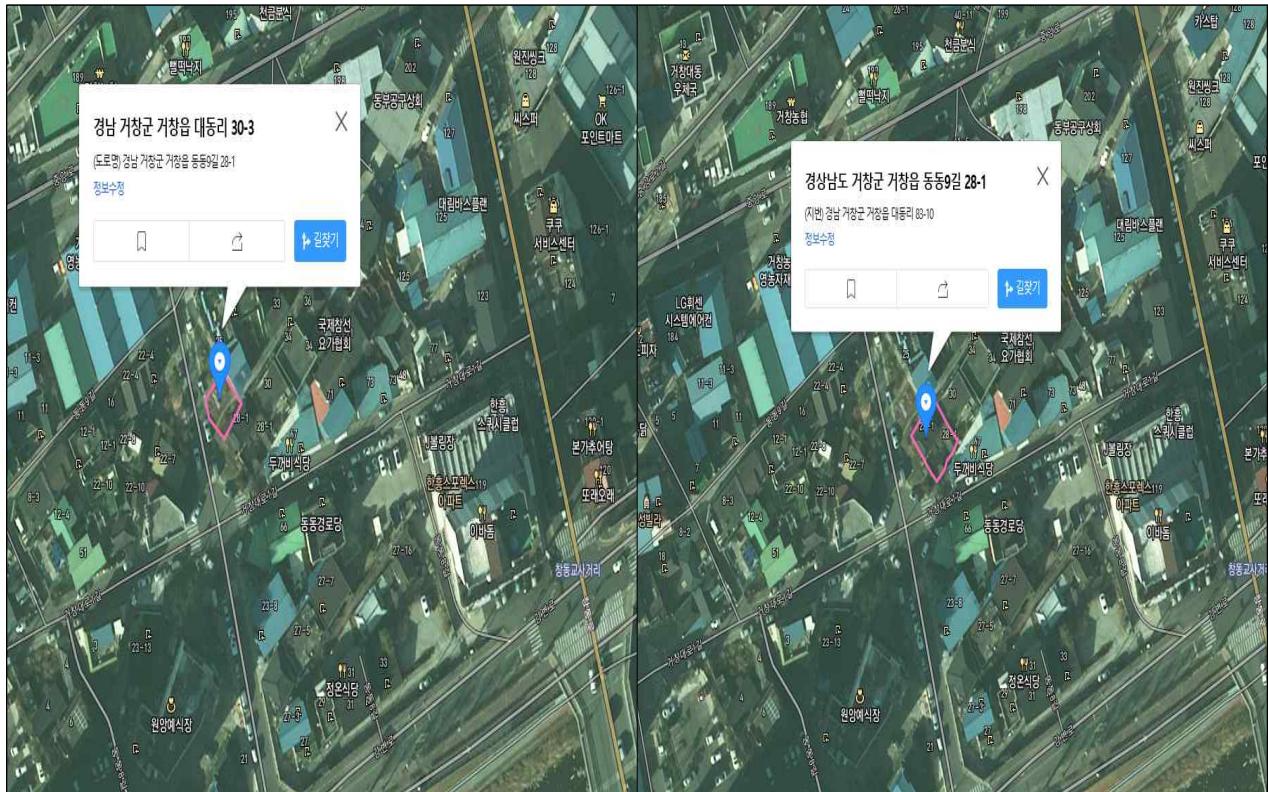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 공유재산 심의 대상 현황[취합]



불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대동리 30-3, 30-11, 8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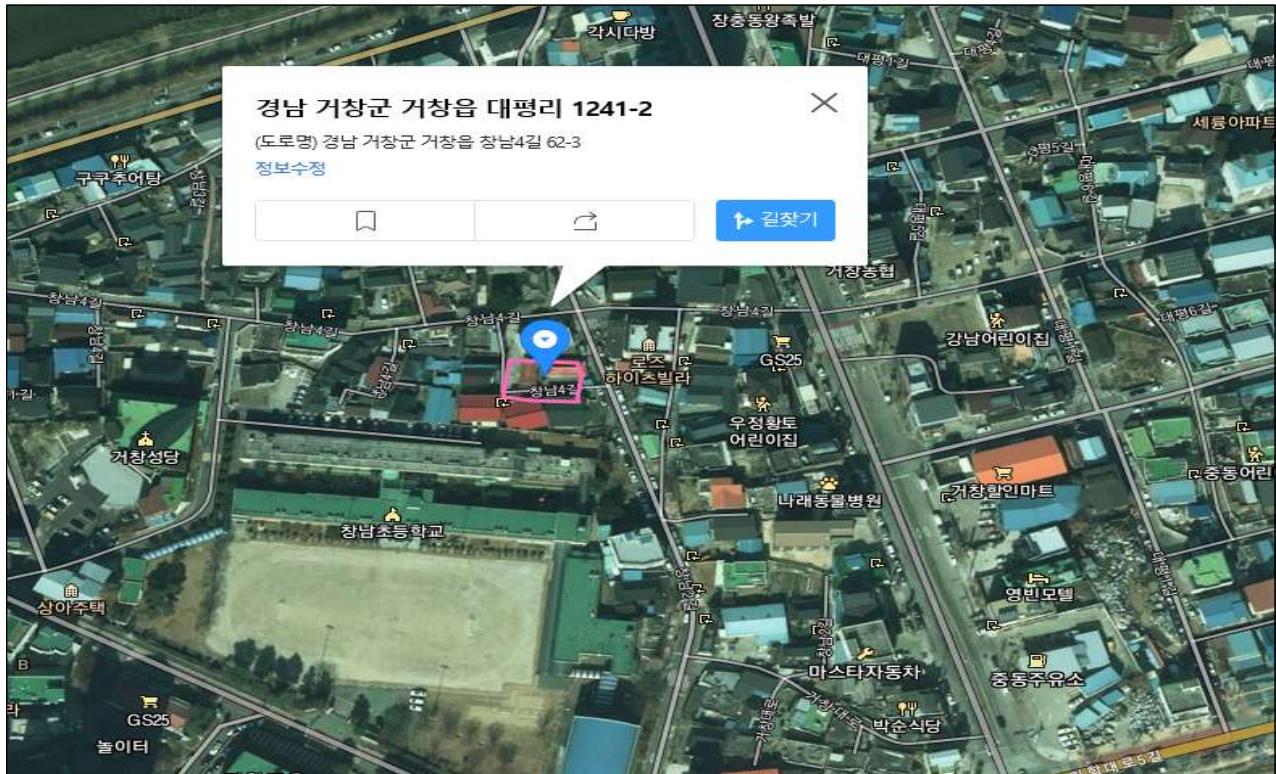
대동리 30-3, 30-11, 83-10



현장사진

붙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대평리 1241-2, 1241-1, 1240-2, 12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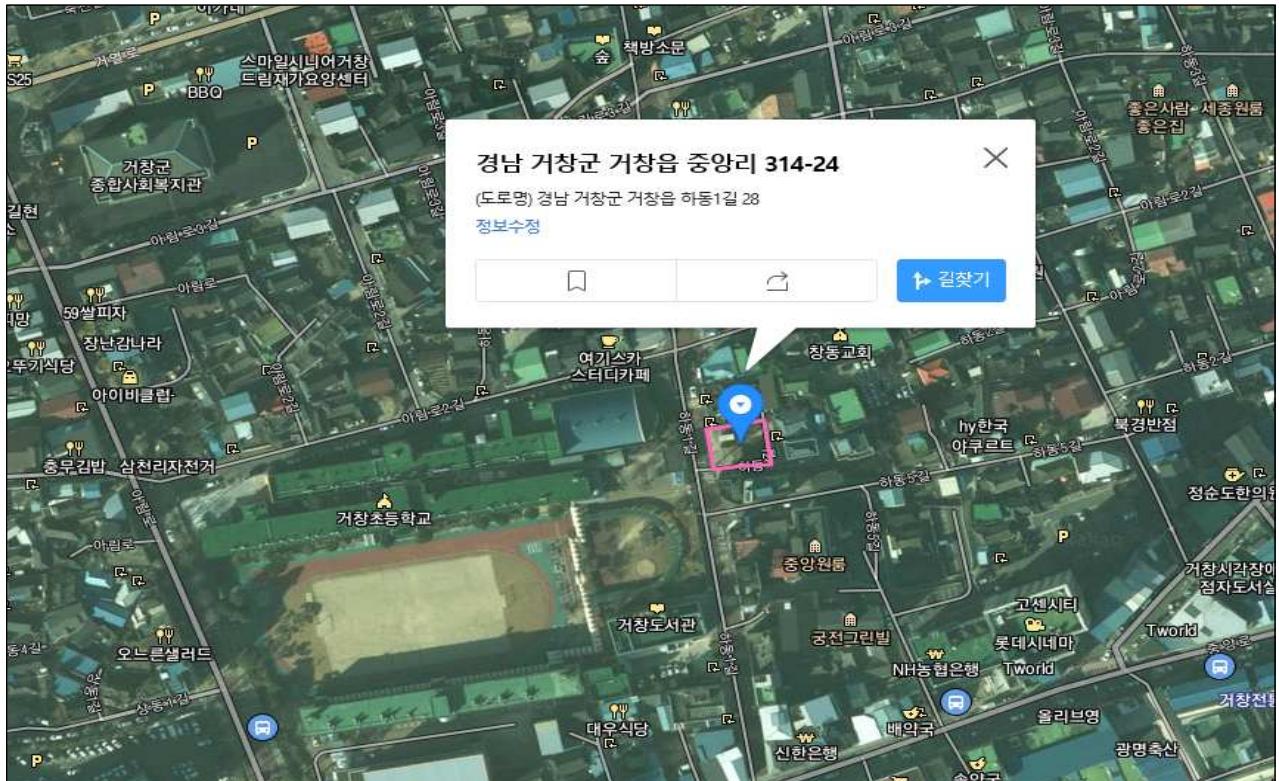
대평리 1241-2, 1241-1, 1240-2, 1237-4



현장사진

붙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중앙리 31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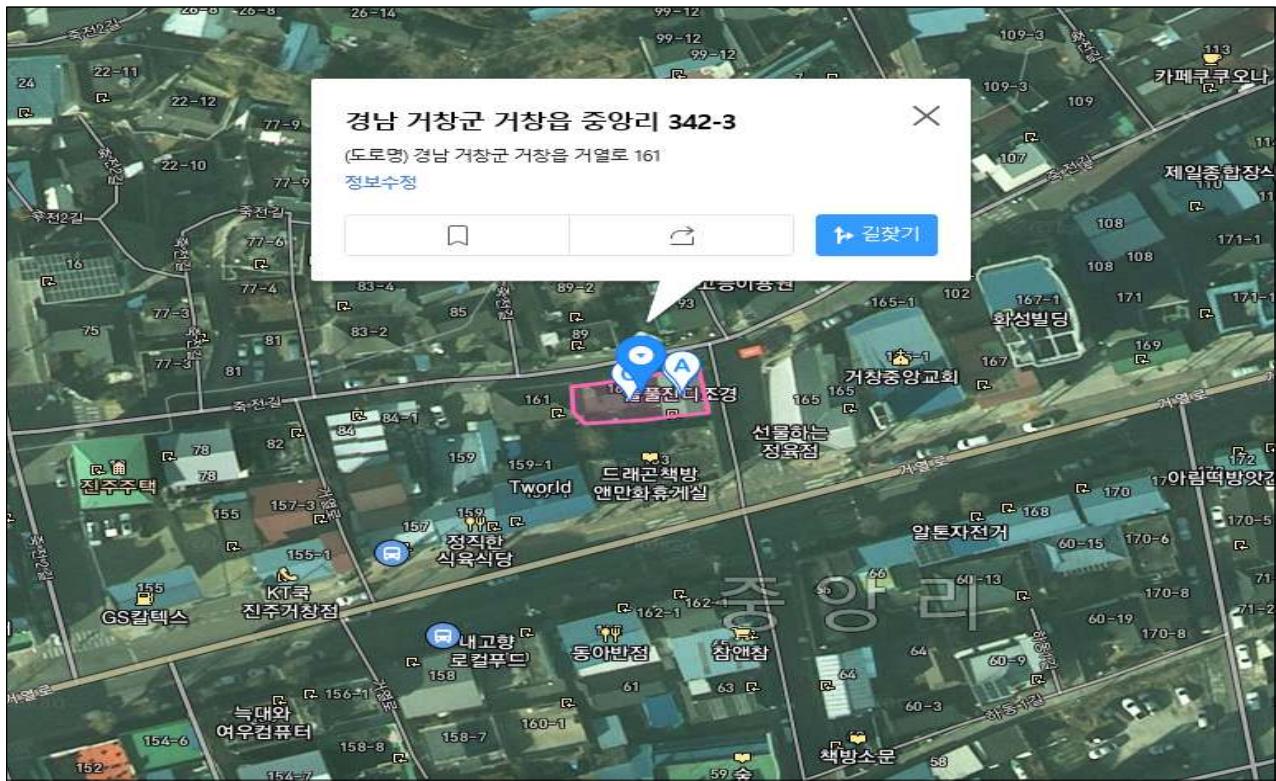
중앙리 314-24



현장사진

붙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중앙리 3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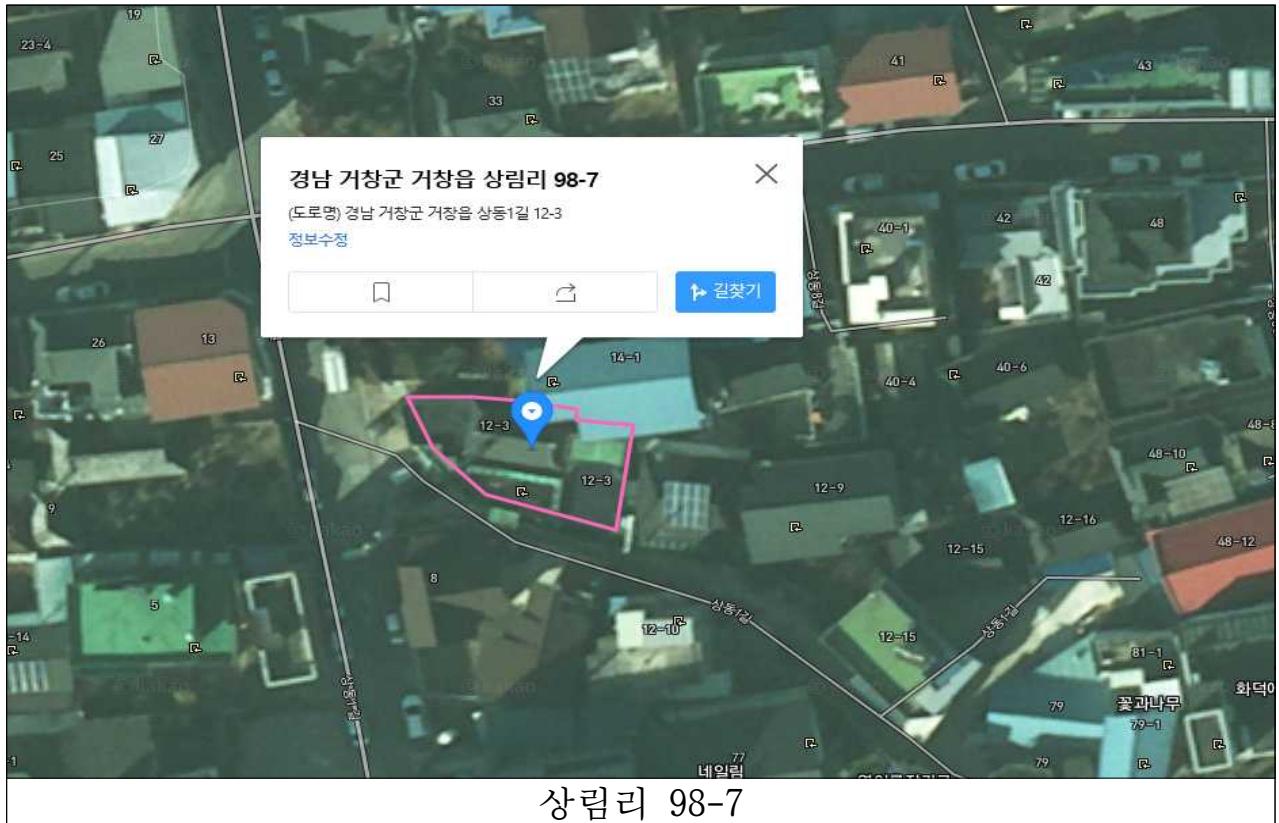
중앙리 342-3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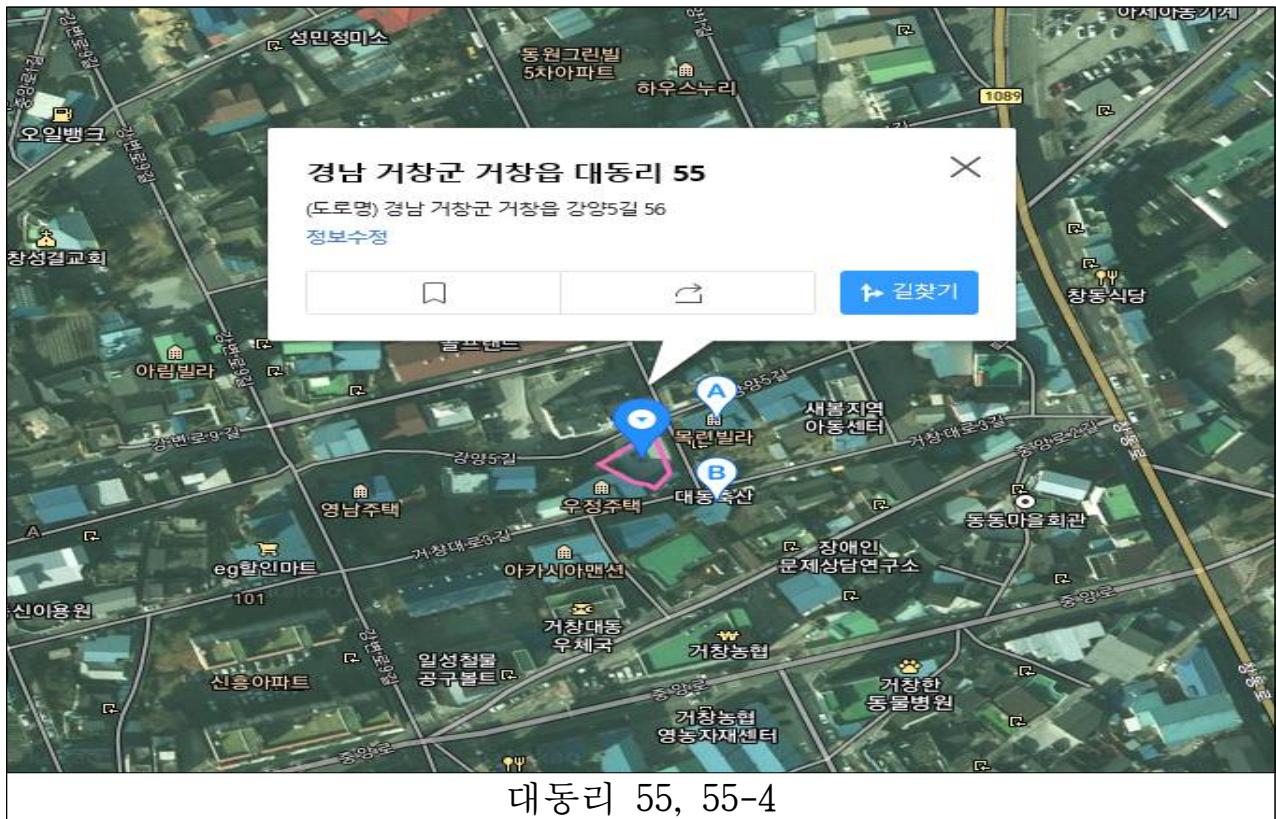
붙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상림리 98-7)



붙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대동리 55, 55-4)



## 5. 검토의견

- 거창군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14개소를 준공하였으나 오래된 주택가 주변은 여전히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임
- 해당 토지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나대지를 매입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 현재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는 정자를 철거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인근에 소공원을 만들어 줘야 할 것으로 보임

### 3 도시재생 빈집활용 등 프로젝트

#### 1. 제안이유

-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만당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마을 상호텔 만당」 주변 유휴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도시재생 시설 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도모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위 치 : 거창읍 중앙리 388-26번지 등 3필지
- 사업비 : 746백만원(명시이월예산 146, 본예산 600)
- 취득면적 : 554m<sup>2</sup>(토지편입면적)
- 용도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업내용 : 빈집 등 매입 후 문화쉼터, 주민공동체 공간조성  
→ 사업비용은 죽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예산사용

#####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합 계			538,000			
취득	건물	중앙리 388-8		54.54	65,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목조/블록조
취득	토지	중앙리 388-30	대	82	42,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취득	건물	중앙리 388-30		46.28	79,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조적조
취득	토지	중앙리 388-26	대	334	156,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취득	건물	중앙리 388-26		46.28	69,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목조/블록조
취득	토지	중앙리 388-24	대	138	68,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취득	건물	중앙리 388-24		19.83	59,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목조

다. 추진경과

- 해당없음

라. 향후계획

- 2022. 07. ~ : 대상지 매입 등 사업추진
- 2023. 12. ~ :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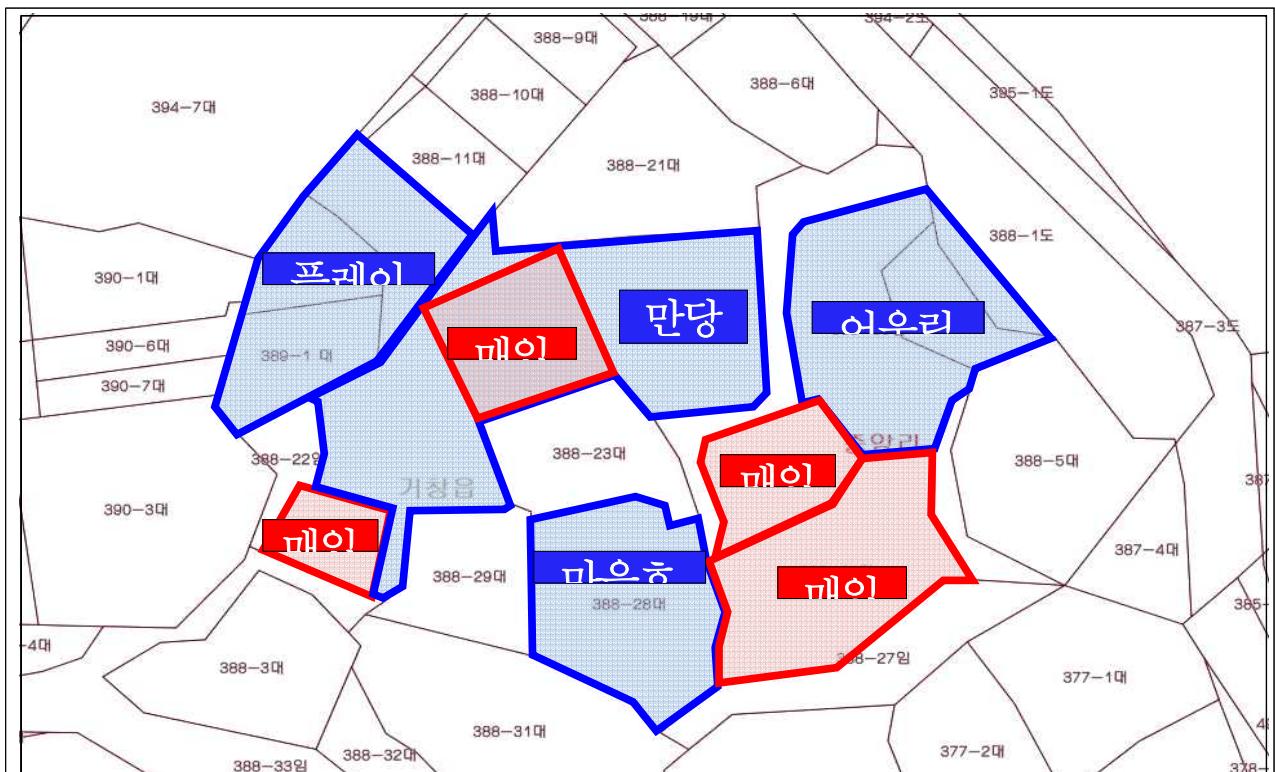
마. 기대효과

- 도시재생 단위사업 간 연결성을 확보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 유휴 군유지 환경정비로 우범지역 해소 및 도시경관 개선

3. 관련법규 및 조례 : 붙임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 매입 대상지 지적도



## 매입 대상지 위치도

## □ 거장읍 중앙리 388-8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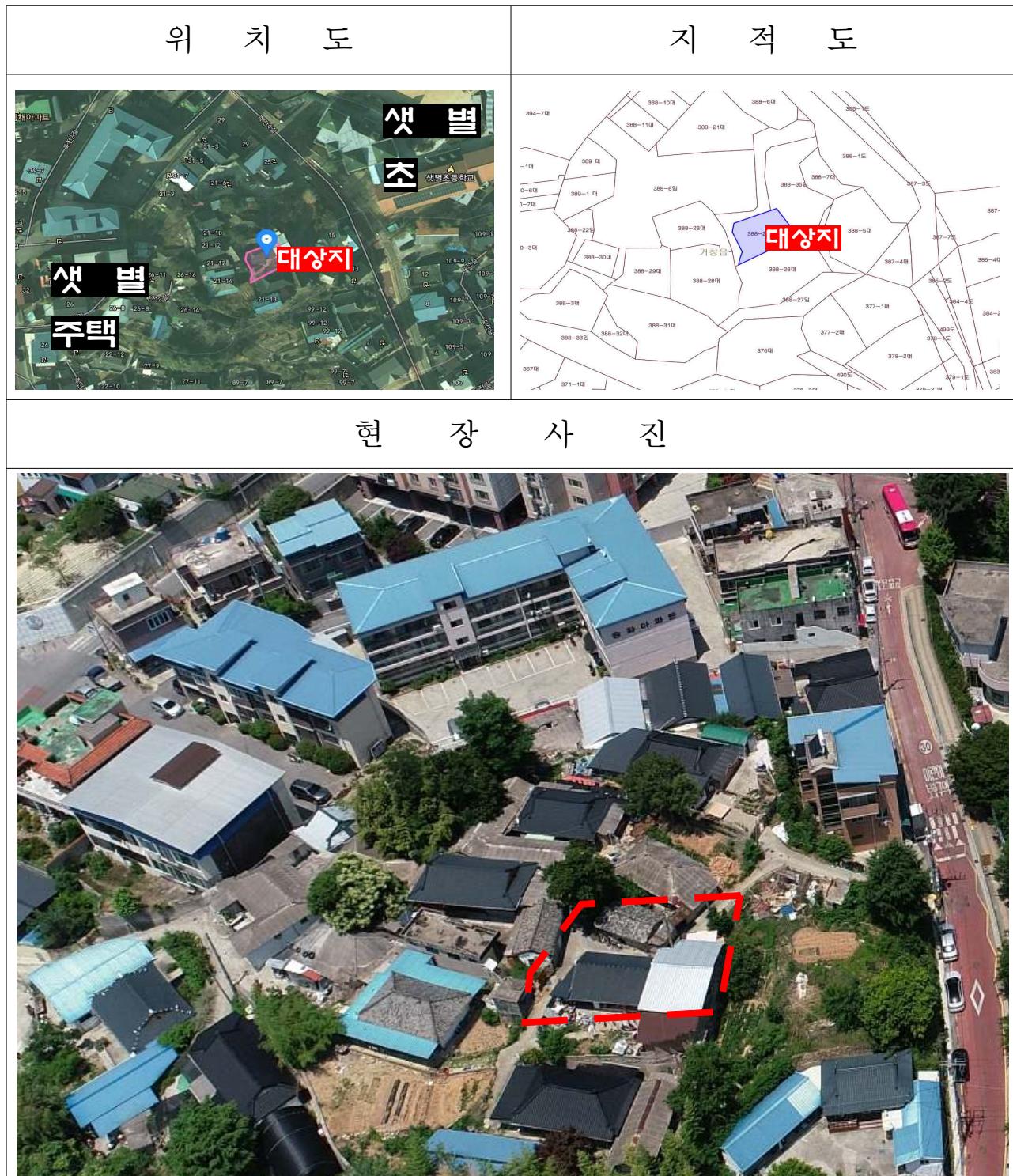
위 치 도	지 적 도
현 장 사 진	

□ 거창읍 중앙리 388-30 일원

## □ 거장읍 중앙리 388-26 일원

위 치 도	지 적 도
현 장 사 진	

## □ 거장읍 중앙리 388-24 일원



## 5. 검토의견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등 5년간('19~'23)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 거창군은 2020년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만당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마을 상상호텔 만당 등을 조성 중
- 해당 토지는 어울림센터 주변 부지로서 도시재생 시설 간의 연결성 확보와 주민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 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 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페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페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 ·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 · 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 · 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7. 8.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2. 7. 11.

### 2. 제안이유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계약이 2022년 10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명칭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주요시설	비고
거창군립 노인요양 병원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4,283㎡ (3,007㎡)	▶ 지하1층 : 기계실, 보일러실, 발전실 ▶ 1층 : 외래진료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행정실, 진단검사실 ▶ 2, 3층 : 간호사실, 입원병실 ▶ 4층 : 치매안심병동, 식당 등	126병상/ 직원61명/ 의료장비 및 물품 325종 2,872개

####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기간 : 2022. 10. 23. ~ 2027. 10. 22.(5년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병원운영 능력 등을 고려
  -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

#### 다. 그간 운영 상황

- 수탁기관 : 아림의료재단서경병원
- 위탁기간 : 2017. 10. 23. ~ 2022. 10. 22.(5년간)

### 3. 동의(승인)사항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통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

### 4.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법인 선정 공고 및 접수 : 2022년 7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22년 8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22년 9월
- 위·수탁협약 체결 : 2022년 10월
- 위탁업무 개시 : 2022년 10월

붙임 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2022.10.23.)이 도래함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자격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위탁기간은 5년간이며, 「치매관리법」 제16조3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자격을 정하여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과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임.

민간위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I

## 관련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설치 · 운영)제1항

## II

## 일반 현황

## □ 위탁기관 현황

- 위탁기관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병상수	대지 면적	연면적
126병상(27실)	4,283m <sup>2</sup>	3,007m <sup>2</sup>

- 보유장비 및 기구 : 325종 2,872개

## □ 그 간 위 · 수탁 추진현황

구분	기 간	운영 기관
1차	2007. 10. 23. ~ 2017. 10. 22.(10년)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2차	2017. 10. 23. ~ 2022. 10. 22.(5년)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III 세부추진 계획

□ 위탁기간 : 2022. 10.~ 2027. 10.[5년간]

□ 위탁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위탁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업무(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 수익금 : 병원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

○ 종사자 고용 및 환자승계 의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 고용 및 입원 환자를 승계하여야 함

□ 운영방향

○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위탁기간은 5년으로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 부여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따름

□ 신청자격

○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추진절차**



□ **세부추진일정 및 내용**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7. 25. ~ 8. 5.(12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게시
- 접수기간 : 2022. 8. 1. ~ 8. 5.(5일간)
- 접수장소 : 보건소 보건정책과(공공의약담당)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주말·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세부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첨서식) 1부
- ② 서약서 1부
- ③ 사업계획서 1부  
(병원운영 목적 및 기본방침, 병원운영 계획, 연계병원 확보계획, 전근무자 고용  
승계 계획, 재정능력, 병원운영 경영능력,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획, 의료인력 확보 및 활용계획 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계획,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체 사업계획, 기타 기술할 사항)
- ④ 대표자 인감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법인 정관 1부(법인인 경우)
- ⑥ 병원 또는 의료법인의 운영규정집(규정집이 작성된 곳에 한함) 사본 1부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⑧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1부
- ⑨ 시·군·구 발행 의료기관 개설대장 1부
- ⑩ 은행등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정기예금)
- ⑪ 신청인(법인)의 기본 재산 및 자금조달 능력 관계서류 1부(증빙서 첨부)
- ⑫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최근의 결산보고서 사본 1부
- ⑬ 공고일 이후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⑭ 신청자의 현 의료인력 현황, 노인과 관련된 장비 보유현황 1부 1부

## ○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구성시기 : 2022년 8월 중
- 구성인원 : 6명 이상 9명 이하
  - 당연직 : 부군수,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 위촉직 : 2~5명(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임 기 :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 후 자동 해촉
- 주요기능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수탁기관 선정 심사

## ○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년 9월 중
- 장 소 : 부군수실
- 참석대상 : 거창군민간위탁 심의위원
- 심의내용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 제안설명 : 신청자 별 20분 이내(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설명)
  - ※ 신청법인이 수탁기관선정심의에 불참하는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운영방식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

## ○ 수탁운영자 선정 공개

- 선정시기 :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 결과통보 : 개별통지

## ○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시기 : 2022. 10월
- 협약기간 : 2022. 10. 23. ~ 2027. 10. 22.(5년간)
- 협약내용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IV 행정사항

- 민간위탁법인 선정 공고 및 접수 : 2022년 7월
- 민간위탁심의위원 추천의뢰 및 구성 : 2022년 8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9월
- 위·수탁협약 체결 : 2022년 10월 중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등의 요구안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 4. 작성자 : 보건소장 이정현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 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보건소]

제4조(설치·운영) ① 군수는 노인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05.10. 5)(2012.11.07.)

1.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3.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3천만원 이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0. 5)

-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05.10. 5)(개정 2012.11.07.)
- ④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보건소)**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5.10. 5)(개정 2008. 1. 14)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